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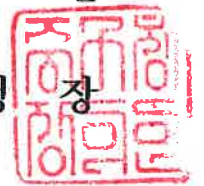
170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  
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환경부) 및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필요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를 인상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100리터 규정을  
삭제하고, 수요가 많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10리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규칙 내용을 정비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재사용, 특수종량제용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판매수수료 인상 6% → 9%(안 10조, 별표 2)
- 나. 생활폐기물용 및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삭제(안 별표 2)
- 다. 재사용봉투 10리터 신설(안 별표 2)

###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 02-3396-5486, 팩스 : 02-3396-8754, email : myjworld@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판매이윤은 봉투가격의 6%로 한다.”를 “판매이윤은 종량제 봉투 판매가의 9%로 한다.”로 한다.

별표 2(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 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제5조 관련)

### 1. 일반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용 봉투

(단위: 원)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판매가	판매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3ℓ	90	5	90	8
3ℓ(재)	90	5	90	8
5ℓ	130	8	130	12
10ℓ(재)	250	15	250	23
20ℓ	490	29	490	44
20ℓ(재)	490	29	490	44
30ℓ	740	44	740	67
50ℓ	1,250	75	1,250	113
75ℓ	1,880	113	1,880	169

○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단위: 원)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판매가	판매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50ℓ	2,000	120	2,000	180
75ℓ	3,000	180	3,000	270

### 2. 특수종량제봉투

(단위: 원)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판매가	판매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20ℓ	2,040	122	2,040	184
50ℓ	5,100	306	5,100	459